# 국권침탈의 역사현장 중명전과 을사늑약의 불법성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#### 을사늑약의 현장-덕수궁 중명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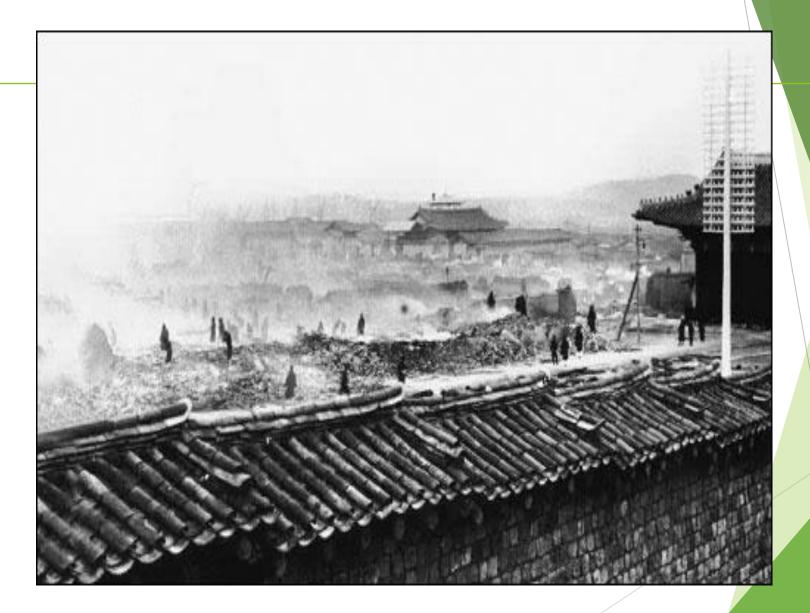
- ► 중명전(重朗殿) 의 원래 이름은 수옥헌. 1899년 황실의 도서 보관을 위한 건물로 지어짐. 경운궁(덕수궁) 내 최초의 서양식 건물. 경운궁의 서문인 평성문 밖 미국공사관 옆에 지은 단층 벽돌 건물
- ▶ 1901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03년 무렵 2층 양관(洋館)으로 재건됨.
- ▶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이후 고종 황제의 집무실로 사용됨. 외국 사절 의 접견, 연회



#### 을사늑약의 현장-덕수궁 중명전

- ▶ 1905년 11월 18일 새벽, 일본의 무력과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
- ▶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이후 중명전->일제 강점기 외국인 사교 클럽.
- ▶ 1925년 화재로 전소되었다가 재건
- ▶ 해방 이후 영친왕 소유-> 2006년 문화재청 인수, 복원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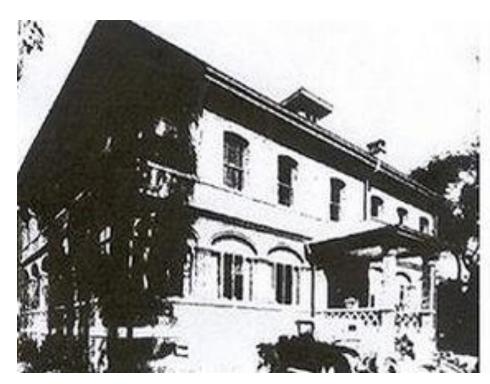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<중명전>



#### 1.을사늑약(1905)의 불법성

#### 을사조약(을사'늑'약<-을사'보호'조약)

#### \*보호국(Protectorate; protected state)

- ▶ 제1조 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, 지휘하며, 일본국의 외교대 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.
- ▶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.
- ▶ 제3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는다.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,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.
- ▶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.
- ▶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
- "각 본국정부에서 <u>위임을 받아</u>본 협약에 기명 조인함. 1905.11.17 외부대신 박제순, 특명전권공사 林權助



#### 1.을사늑약(1905)의 불법성

#### 을사늑약 무효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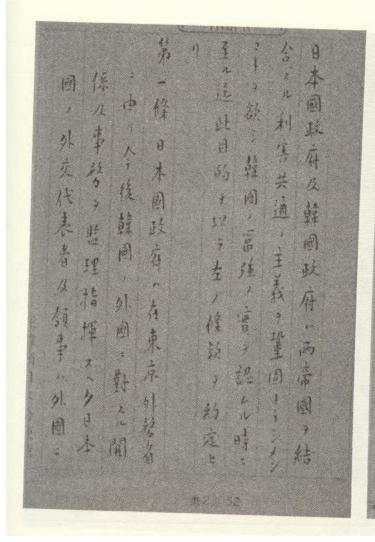
- (1) 제목도 없는 조약
- (2) 위임장, (주권자의) 비준서 없음
- (3) 강박(물리적 강제/조약 대표자에 대한 협박, 강제)
  - cf. 국가에 대한 강제(전쟁에 의한 결과)
- (4) 국제법적 무효의 사례 파리대학 법학과 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무효론(1906)
  - ->미국 국제법 학회 의뢰에 의한 1934년 하버드 법대 보고서
  - ->1963년 유엔 국제법 위원회 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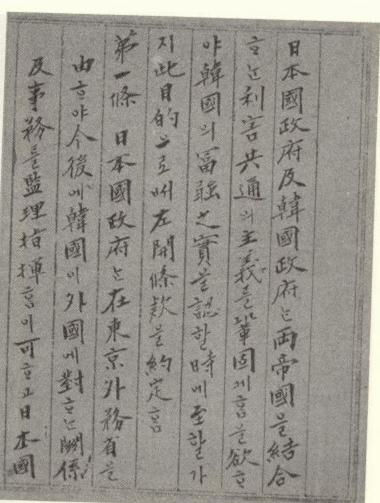






[자료 1] "을사보호조약"의 한국문과 일본문(첫면), 조약의 명 칭이 들어가야 할 첫줄이 비었다.





### 을사늑약 원본(조약제목 비어있음)





[자료 2] "정미조약"의 한국문과 일본문(첫면). "을사조약"과는 달리 "한일협약", "일한협약"이라는 명칭이 붙었다.

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(建計韓國)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(治政政等的關京市等國政府(治政政等的關京市等一條 韓國政府(治政政等的關京市等一條 韓國政府(治政政等的關京市等一條 韓國政府(治政政等)制定及重要統監引指導可能受賣事

### 2. 병합조약(1910)의 불법성

병합조약 무효론

- (1) 순종의 서명(이척李坧) 위조 cf. 이완용에게 내린 위임장
- (2) 병합선포 칙유(비준서에 해당)의 순종 자필 서명 결여



#### 2. 병합조약(1910)의 불법성

한일병합조약(1910.8.22)

- ▶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,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.
- ►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 에 병합함을 승낙한다.
- ▶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·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,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.
- ▶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,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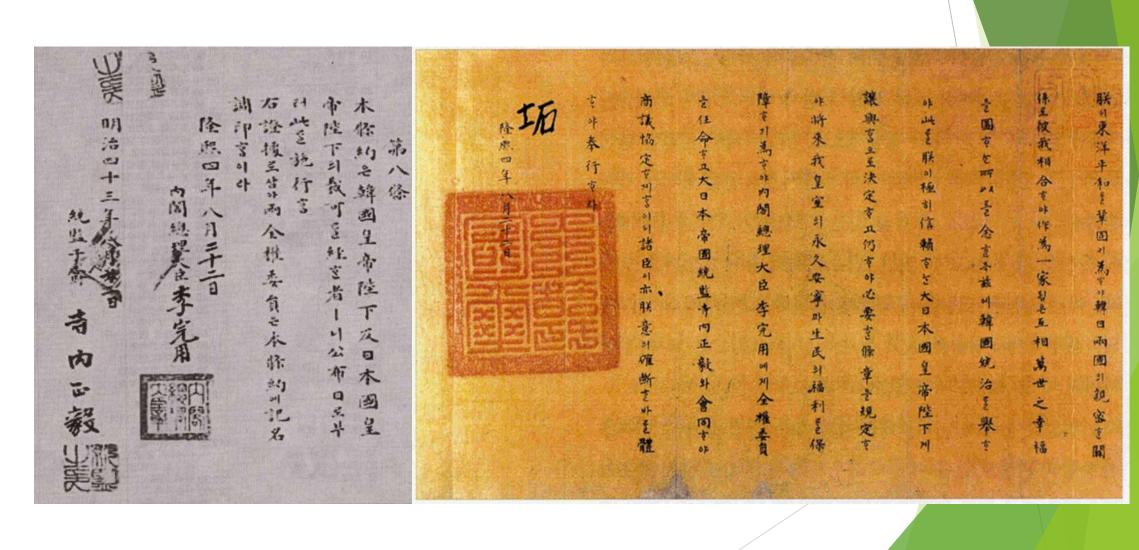


### 2. 병합조약(1910)의 불법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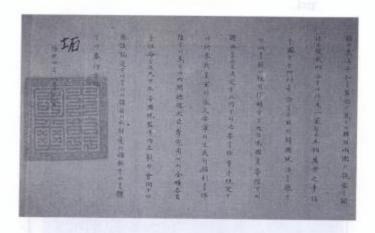
- ►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,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 된 자에 대하여 영작(榮爵)을 수여하고, 또 은급을 줄 것이다.
- ▶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,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.
- ▶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것이다.
- ►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 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.
  - 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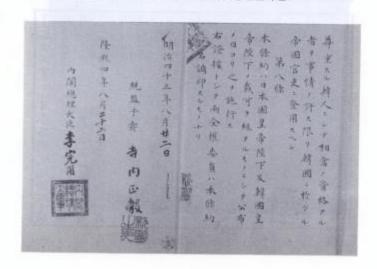
### 한일병합조약(1910)과 위임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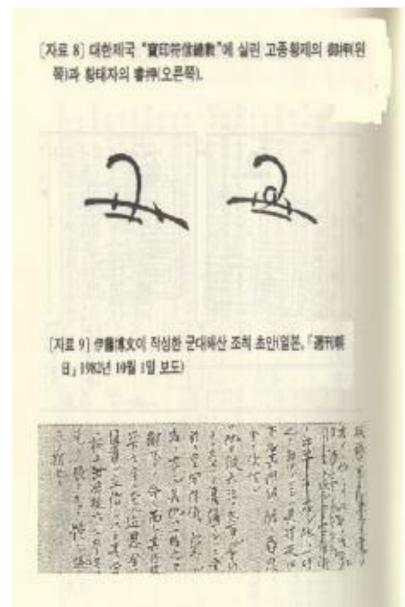


[자료 18] "일한병합조약"의 한국측 전권위원(총리대신 이완 용) 위임장. 황제의 이름자 서명의 필세가 떨려 있다.



[자료 19] "일한병합조약"의 제8조 및 기명 날인 부분.





[자료 10] 1907년 11월 18일-1908년 1월 18일간 田軌, 敎令, 法 律 등 법령류 재가에 위조된 서명들의 사례.



拓拓拓 5 拓

### 병합조약 칙유(한국 측 선포문서)

隆熙四年八月二十九日

で克盤なみ

至意言聖出言可以同臣民等之联記意

從京日幸福受共受日本展日今日此學三前

有聚是隐言日山口計圖有聚是敢活言外也

京五各安其禁言日本帝國文明新政之版

中夜憂處口善後皇策川能然堂川外此 京中臨御以後五今日山至五再维新政令山 臣民之國勢以時宜是深察之山如為煩擾 四到之中時日間日提田重施指無望之日 皇帝若回朕日 五月三五八城四民生世保全四世五丁惟獨大小 川讓與京此外是東洋山平和臺羅園川市 然日旬衛之非益日韓國日統治權之從前 世不如之故至朕川於是四聖然日內省宝廊 中完全言方法升革新言功効是奏到京 中日日自成了五則無寧司大任是人日日托力 そ任でい支離益甚を可終而以收拾之不得 公日由來五積弱以成 痼中三被弊斗極處 開京正面圖寺正備武寺田用力日未當不至



